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4 -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노3525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안수진(기소), 강우송(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진호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11. 6. 선고 2024고정236 판결
판 결 선 고	2026. 4.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D가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E지에 실은 공공저작물로서 원작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2. 직권판단(공소장변경)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항의 범행일시 '2022. 3. 29. 18:40경'을 '2022. 12. 7. 18:09경'으로, 결국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각각 침해하였다'를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복제하고 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각각 침해하였다'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D 시정소식지에 수록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원저작자인 피해자에게 있고 공공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D가 원저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았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2쪽 제12행 '2022. 3. 29. 18:40경'을 '2022. 12. 7. 18:09경'으로, 제18행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각각 침해하였다'를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복제하고 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각각 침해하였다'로 각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9-10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임태혁 _____

 판사 김석수 _____

 판사 김수정 _____